

#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재진 의원 외 44명
- 의안번호 : 제1042호
- 발의일자 : 2023년 8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「산림보호법」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,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, 보호수의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는 등 서울시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보호수를 지정할 때 고시 및 이의신청 사항을 신설함(안 제3조).
- 나.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3조의2).
- 다.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사항을 신설함(안 제3조의3).
- 라.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3조의4).
- 마.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4조).
- 바. 보호수의 보호에서 행위 제한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함(안 제8조).
- 사. 보호수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##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산림보호법」에 규정된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,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, 보호수의 행위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보호수에 관한 사항은 「산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) 제13조부터 제13조의6<sup>1)</sup>까지 규정되어 있으며, 시장의 보호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<sup>2)</sup>로 규정하고 있음.
- 지난 2019년 법이 개정<sup>3)</sup>되면서 ‘보호수의 지정·고시’, ‘보호수의 관리 이전’, ‘행위제한’, ‘지정해제’ 등이 정비되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나 동 조례는 201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타법개정<sup>4)</sup> 이외에는 개정된 바 없으므로 상위법에서 명시한 법적 근거를 준용하여 규정하는 한편, 현행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세부적으로 안 제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는 보호수의 고시와 관련하여 지정 사유 등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고,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, 소유자의 법 이해와 관리청의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1) 제1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, 제13조의2(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), 제13조의3(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), 제13조의4(보호수의 지정해제), 제13조의5(보호수 심의위원회), 제13조의6(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)

2) [시행 2010. 3. 10.] [서울특별시조례 제4852호, 2009. 9. 29., 제정]

3) [시행 2019. 7. 9] [법률 제16197호, 2019. 1. 8, 일부개정]

4) 타법개정 연혁(2017. 1. 5., 2019., 7. 18., 2020. 12. 31.)

- 안 제3조의2(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)는 보호수 관리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<sup>5)</sup>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, 보호수가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.

현행 조례 제4조(보호수의 해제)에서는 공용·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에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호수의 지속가능한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같은 조 제2항은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목의 생육, 이식, 질병, 토양 등 여러 수목관리 분야 기술자 등이 포함된 전문가 조직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임.

- 안 제3조의3(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)은 현행 조례 제8조(보호수의 보호)에 규정된 부분을 제1항의 ‘행위 제한’과 제2항의 ‘예외 사항’으로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것이며, 제3항은 행위 허가 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 보호수

---

5) 제4조(공익사업)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8., 2015. 12. 29.>

1. 국방·군사에 관한 사업
2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·도로·공항·항만·주차장·공영차고지·화물터미널·궤도(軌道)·하천·제방·댐·운하·수도·하수도·하수종말처리·폐수처리·사방(砂防)·방풍(防風)·방화(防火)·방조(防潮)·방수(防水)·저수지·용수로·배수로·석유비축·송유·폐기물처리·전기·전기통신·방송·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·공장·연구소·시험소·보건시설·문화시설·공원·수목원·광장·운동장·시장·묘지·화장장·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
4.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·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
5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, 교량, 전선로,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
7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,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
8.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
의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- 안 제10조(보호수의 점검)는 현행 조례에서 ‘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’하도록 하는 것을 ‘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병행’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정기점검의 기한을 1년으로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한편, 서울시는 2023년 현재 지정보호수 202주를 관리<sup>6)</sup>하고 있으며, 병해충방제 등 ‘보호수 생육관리’와 지지대, 안내판 등 ‘보호수 시설정비’를 추진하고 있으나 총 예산은 6억 4천6백만원으로 보호수 1주당 연간 약 320만원의 적은 예산이 책정돼 있음.

지난해 정밀진단 및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육이 불량한 수목 11주가 파악된 바 있고 영양공급 등의 피해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2021년 보호수 고사로 2주가 지정해제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주가 줄기 부후로 해제<sup>7)</sup>되고 있어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피해치료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### 〈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현황(2023년)〉

- 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, 거목, 희귀목 등의 수목에 대하여 「산림보호법 제13조」에 의거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며, 수종별 연령, 크기 등은 산림청 「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」에 의함
- 현재 서울시 내 15종 202주가 지정되어 양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, 이 중 종로구가 30주로 가장 많음  
(서초구 24주, 용산구 19주, 마포구 15주, 중구 13주, 은평구 12주 등)
- 상록수는 소나무, 향나무 등 3종 23주,
- 낙엽수는 느티나무, 은행나무 등 12종 179주의 키 큰나무로 구성

6) 2023년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(조경과-369, 2023.1.11.), 2023년 소요예산 6억 4천6백만원

7) 졸참나무('22.12.01., 성북구), 느티나무('21.12.30., 서대문구), 회화나무('21.12.30., 송파구)